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5. 4.(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재)부산영어방송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 (2016-24-09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재)부산영어방송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부산영어방송의 베트남어방송 신규 편성과 이에 따른 영어방송 편성비율 변경을 승인한다’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2012년 12월 영어FM방송사에서는 중국어방송 허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위원회 의결로 3개 영어FM의 방송사항을 다국어방송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때 다국어방송의 편성비율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조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재)부산영어방송에서는 베트남어방송 신규편성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변경 승인 신청내용은 영어, 중국어 이외에 베트남어방송 일요일 2시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경전과 변경후를 보시면 영어가 91.7%에서 90.5%로 줄어드는 대신에 베트남어가 1.2%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별 다국어방송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송사항을 다국어방송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해 온 것이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나 참고로 지금 부산에서 베트남 거주민들이 있어서 아마 베트남어방송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제주에도 영어FM이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본다면 제주에는 영어 말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취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제주 같은 데에서 다국어방송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자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혹시 그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나 해서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우리나라에 4개의 영어FM방송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중국어방송과 영어방송을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중국어방송이 처음부터 허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베트남어가 신규 언어로 신청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다른 방송사들도 지금 베트남어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시 베트남어에 대해서 편성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위원회에 2016년 1월 28일 보고된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에 따라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이 가능해지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복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EBS에서 2015년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채널의 정의 및 승인근거 등 신설입니다. 다채널방송 채널에 대해 '부가채널'로 법적지위를 신설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승인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표시를 보시면 승인대상사업자는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범방송 결과 등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채널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가채널 재승인 시 추가적인 심사항목으로 방송평가 결과,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규정하였고, 부가채널 승인·재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가채널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얻은 경우와 승인·재승인을 얻지 않고 부가채널을 운용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그리고 부가채널 편성내용과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까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결국은 콘텐츠 제작의 재원이 되는 광고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 매체에서도 혹시 상업광고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느냐 해서 광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광고는 금지되는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광고금지하는 규정을...

○ 최성준 위원장

-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방송법상으로는 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두고 있지 않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승인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광고협찬 부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고, 광고협찬규제는 1월 28일 위원회에 보고한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따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승인장에만 광고금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럴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에 대해 다들 민감한데 과연 승인장에 기재하는 것만 가지고 광고가 금지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들이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승인장에 규정을 기재함으로써 앞으로도 광고가 허용되도록 쉽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시행령에 유형별로 규제하라는 근거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광고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체계를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채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법과 시행령의 체계상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특정 채널에 대한 광고금지를 주로 허가증 사항으로 규제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BS1입니다. KBS1 채널에 대해서도 허가증 사항에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부가채널에 대해 승인장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으로 부여하더라도 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제재로 승인을 취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입장이라면 일부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충분히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체에 잘 설명해 주셔서 불필요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MMS를 도입하면서 EBS에 허용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EBS2 채널로 나가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채널 배정이 물론 캐리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후반부에 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우리가 도입에 따른 또 정식으로 방송 인가가 되면 시범방송 후 정식 방송이 되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후반부에 채널이 배정되어서야 잘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 의무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혹시 가능한지, 기술상으로 사무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EBS 측에서는 EBS2 채널을 유료방송에 안정적으로 또 좋은 번호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서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해 주는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이 실제 법 개정사항이고 또 미래부가 주관 부처이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1개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또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정적인 번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주시는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EBS 쪽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PTV사업자 3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서 초창기에는 150번대 이후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95번대로 3사가 동일한 채널로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MSO 채널에 좋은 번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MMS 도입은 법제화에 따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3페이지 입법예고안을 보면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하는 취지는 EBS가 이렇게 특정해서 법에 지정하기에는 법제 기술상 부자연스러워서 대통령령으로 대상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 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교육격차 해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우리가 굳이 명시적으로 EBS 다 알고 있고 양해사항이고, 또 다른 매체들도 EBS가 MMS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이런 단어를 써서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법제 기술상 이런 표현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교육격차 해소'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은 EBS를 염두에 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보시면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을 규정할 때 추상적인 용어를 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기술상 다른 단어로, EBS를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굳이 꼭 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처 견해가 그렇다면 이것을 특정 사업자를 지칭하는 데 따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사업자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을 우리가 보고받을 때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MMS 도입 방안 논의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상파방송이 디지털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직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기술입니다. 하나 물어볼 것이 우리는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 의 경우 기존의 6MHz 대역폭에서 지상파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게 다채널방송을 운용하도록 권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일반적인 예는 그런 것이지요? 특별히 승인해 주기보다도 정부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도입하도록 활성화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저희는 HD를 지향하는 정책을 이미 공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SD도 도입하는 것으로 디지털방송의 정책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 보니까 SD로는 많은 채널들이 제공될 수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페이지 제9조의4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매체를 승인 내지는 허가해 줄 때는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뒤에 단서조항이 붙는 경우는 사실 혼치 않습니다. 방송 관련법에서 진입규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진입장벽을 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유제한이나 편성제한이나 보도·광고 제한은 항목에서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그렇게 승인을 하기 위한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방송 관련 입법에서는 상당히 혼치 않는 사례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래도 그동안 더 많이 검토해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입법례가 있었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진입 규제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외에 방송법에 소유 관련된 규제 부분에 있어서 방문진이라든지 MBC라든지 몇 가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한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진입 규제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혼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김석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기 단서조항, 설사 필요에 의해서 두더라도 가운데 부분 특정한 방송사를 지칭하는 표현을 빼고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 부분 단서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수차례 논의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 KBS의 MMS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KBS에서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KBS 쪽 의견은 공식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의견은 후반부에 있는 단서조항에 있어서 이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 EBS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이 좀 우려된다는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MMS 추진에 대한 KBS 내부의 입장이 가끔 보면 그 의지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영방송인 KBS의 MMS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

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KBS가 물론 경영진들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의 케이뷰(K-View)라고 다채널방송을 추진했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KBS가 케이뷰(K-View) 추진을 중간에 중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국가기간방송이라면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들 우려하듯이 지금 방송광고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놓고 사업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MMS 도입을 하더라도 그 채널이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지, 상업광고 채널로까지 성격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MMS를 EBS에 주기로 할 때 우리가 논의한 것들을 다시 짚어보면 공영방송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중에서도 MMS 채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 콘텐츠가 많은데 이것을 담을, 수용할, 이것을 릴레이할 채널이 부족하다면 늘려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시청자들이 채널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MMS를 많이 늘려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EBS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 경감, 더 심각한 것은 학원을 다닐래야 다닐 곳도 없는 농어촌 지역 벽오지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방송을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MS를 전반적으로 넓혀 주기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그러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공감을 많이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한 것이지요. 우리가 논의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인데, 공영방송인데 교육격차 해소 말고도 국가 재난방송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해 놓고 의견서가 들어오면 어차피 국회에서 또 논의할 것입니다만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MMS 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해 나간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단계로 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2단계로 넓혀나갈 때 다른 방송들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토론, 논의할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어디와 해야 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부처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정책에 관련된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미래부하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미래부도 협의해야 합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MMS의 방송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넓혀 나가는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의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규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한 규제인지,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넓히는 것인데...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절차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법령 개정할 때는 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런 의미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채널방송(MMS), 이것이 방송법상, 오늘 개정안대로 하면 부가채널이라고 명명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다채널방송(MMS)이 부가채널이라는 말은 잘 설명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9조의4제1항 입법예고안을 보면 ‘전파법에 따라 개정된 방송국에 지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정된 동일한 주파수 내에서 추가적인 채널입니다. 설명할 것은 추가적인 채널, 지정된 유일한 주파수 내에서 추가적인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동일한 주파수 내 부가채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다채널방송에 맞는 뜻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설명하는 것까지 붙이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어쨌든 ‘부가채널’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던 MMS 개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가채널, 이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아주 오랫동안 검토도 하고 최근에 지난 1월에 정책방안을 보고받은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서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상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방안 논의할 때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이야기를 또 방송법을 개정할 때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또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또 논의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논의 자체를 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그때 정책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하신 그 일정대로 가면서 또 관계부처나 각계의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또 한 번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현 상태로 입법예고를 하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굳이 내용을 수정

한다든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두 마디 말씀드리면 다채널방송이라는 것이 기존에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그 주파수 범위 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주파수 범위 내에서 압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널을 하나 더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채널의 운용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면 그것이 별도 독립되어 있는, 추가되는 채널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방송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하나 더 운용한다는 의미에서 부가채널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의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이것도 같이 따라 종료되고 별도로 다시 또 재허가를 받을 때 재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부가채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작명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의미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표현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채널방송을 허용하면서 그 다채널방송을 제한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채널방송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8일 위원회에 보고된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 다른 방송과의 광고 문제 등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채널방송은 지상파방송이기 때문에 직접수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EBS2의 경우에는 직접수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 못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문제는 아무리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난 1월 도입방안에 그런 의미를 담아 EBS의 다채널방송을 허가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외국에서 이 다채널방송(MMS)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방송의 흐름은 이렇게 주파수를 압축해서 효율화한 혜택으로 자꾸 다채널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더 적은 주파수에서 방송을 하고 그 나머지 주파수는 또 순수한 지상파방송용이 아닌 방송과 IPTV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담지 못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만 우선 담기로 하고, 대상사업자라든지 또는 승인·재승인 절차, 특례 규정 같은 것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일단 위임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운용을 해 나감에 있어서 법체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시행령으로 위임한 대상사업자, 광고문제, 협찬, 보도제한 문제들은 지난 1월에 저희가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으로 보고받은 정책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특히 승인조건에 광고협찬의 문제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의 절차에서 1월에 만든 정책방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정책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로 입법예고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19일 개최하기로 하되 시간은 행사관계로 유동적이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9분 폐회 】